

#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

(김경영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86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10월 15일

발 의 자 : 김경영, 권수정, 김경우,  
김생환, 김제리, 김화숙,  
문병훈, 박기재, 이영실,  
이정인, 조상호 의원(11  
명)

## 1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치매관리법」 개정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기능이 구체화되어 후견인 후보자 추천 및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등의 내용이 신설된바,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광역치매센터의 업무에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 추천 업무를 추가함(안 제3조의7 신설).
- 나. 광역치매센터의 업무에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사무의 지원 업무를 추가함(안 제3조의8 신설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치매관리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3조제7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 추천
8.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 사무의 지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3조(업무) 광역치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~ 6. (생   략)</p> <p><u>&lt;신   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  설&gt;</u></p> <p>7. (생   략)</p>	<p>제3조(업무)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치매관리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 추천</u></p> <p>8. <u>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사무의 지원</u></p> <p>9. (현행 제7호와 같음)</p>